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13호> 2024년 7월 10일

정책/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저작권법상 창작

■ 배경

-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실제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며 해외에서는 고액연봉을 보장하는 곳까지 등장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생성형 AI) 솔루션을 안내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생성형 AI는 인간을 모방하려고 시도하지만 고품질의 관련성 높은 결과물을 생성하려면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AI가 사용자와 더 의미 있게 상호 작용하도록 안내하는 가장 적절한 형식, 구문, 단어 및 기호를 선택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입력 텍스트 모음을 생성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의 생성형 AI가 예상대로 작동한다.

- 예컨대 Open AI출신들이 나와 차린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은 3~4억 수준의 연봉을 내걸고 엔지니어, 데이터 라이브러리 관리자 채용공고를 낸 바 있음¹⁾
- 일부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자신의 프롬프트를 판매하기도 함. ‘프롬프트베이스(PromptBase)’ 같은 마켓에서는 명령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짐²⁾
- 2021년 이후 2만 5,000명 이상이 프롬프트를 사고팔았으며, 2023년 2월 기준 700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전자책용 프롬프트를 판매중
-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활동(authorship)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의 영역에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롬프트 작성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인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1) 박혜림, “말만 잘해도 월급 800만원” 국내 첫 뽑는 직장, 뒤길래 난리?, 헤럴드경제, 2024.3.15.

2) 정미하, ‘AI와 대화가 직업?...코딩 필요 없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뜬다’, 조선비즈, 2023.2.27.

- 최근에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새로운 예술 사조를 ‘Promptism Movement’ 라 칭하기도 함³⁾

■ 주요내용

1. 저작권법상 창작의 의미

- (저작권법상 창작) 우리 저작권법상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하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의미하므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가 필요.* 다만, 저작물성의 인정 요건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창작성’ 을 요구

* 이는 저작물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 창의적인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함을 의미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창작적 기여가 없이 단순한 지시형 내지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이라면 창작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표] 주요국의 AI 산출물 관련 저작권 정책 비교

	EU의 'AI ACT'	USCO '정책성명서'	일본특허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초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	인간의 창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 가능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AI 생성물에도 저작물성 인정	인간의 창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 가능
AI 산출물 표시의무	AI로 조작된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명시할 의무 규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AI 저작자 인정여부	-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3) Hayward, Jeff., ‘The Growing Art Movement of ‘Promptism’’, Medium, 2022.9.17., <<https://medium.com/counterarts/the-growing-art-movement-of-promptism-9ec956d82a61>>

○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거절 사례)

- (국내) 유명작가의 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삼고, 이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영상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고 하면서, AI가 영상화한 영상물의 등록을 반려(‘22년 10월 4일 접수, ‘22년 11월 3일 반려 통지)
- (미국) Stephen Thaler는 저작자를 AI 프로그램인 ‘Creativity Machine’ 로 기재하고 자신을 기계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라는 그림을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 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등록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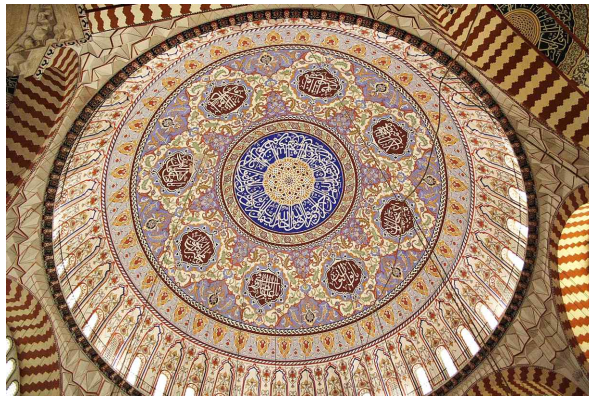
2. 저작행위(authorship)의 범주

- (창작에서의 도구 사용) 컴퓨터를 활용한 창작과 예술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컴퓨터는 인간이 손으로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생성형 AI 창작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비교되는 것으로는 카메라 촬영(사진저작물)과 프랙탈 아트 등이 있음
- (사진저작물) 우리 대법원은 사진의 저작물성을 다루는 사건에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고 판시.⁴⁾ 미국 역시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1884) 사건에서, 사진저작물을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콘셉트를 대표” 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성 인정⁵⁾
- (프랙탈 아트) fractal art란 프랙탈 구조를 이용한 예술작품으로 단순한 기하학 문양들을 디지털 이미지화함으로써 계산된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술을 의미. 1980년대 중반 디지털 아트를 통해 발전한 뉴미디어아트 분야의 한 종류로 수학적 계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추상예술을 표명함. 프랙탈 아트는 반복되는 선들의 분할로 다각의 문양을 만들어내며, 예술작품의 하나로 인정됨

4)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5) 김윤명, “생성형AI의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한국법학원, 2024.2, 265-67면.

[그림] 프랙탈 아트 사례, 터키 에디르네에 위치한 셀리미예 모스크의 돔 패턴



3. 프롬프트 작성은 저작행위(authorship)일까?

- (문제 제기) 인간이 AI에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의도와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 있을 경우 이를 저작행위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됨.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변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은 사실상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프롬프트의 속성)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텍스트-이미지(Text to Image) 생성형 AI에서 프롬프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 이용자는 이미지의 주제, 배열, 배경, 색 구성 및 크기와 같은 정형적 개념뿐 아니라, 화풍(Artistic Style), 분위기(mood), 테마(theme) 및 톤(tone)과 같은 비정형적 개념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입력함⁶⁾
 - 한 연구에 따르면, Midjourney를 이용한 AI 생성물 창작에 있어서,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고 함⁷⁾
- (프롬프트 창작성 사례 ①) 지난해 8월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화가가 아닌 게임 기획자 제이스 앨런이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든 그림. 앨런은 미드저니에 900번이 넘는 지시어를 입력하며 80시간을 보낸 끝에 이 그림을 제작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저작권청(USCO)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6) 강현호·한의태·정재석,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판단에 대한 고찰-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146권, 2024.6, 24면.

7) Yanru Lyu et al, “Communication in Human-AI Co-Creation: Perceptual Analysis of Paintings Generated by Text-to-Image System”, Applied Sciences, 12 (22): 11312 (2022), p.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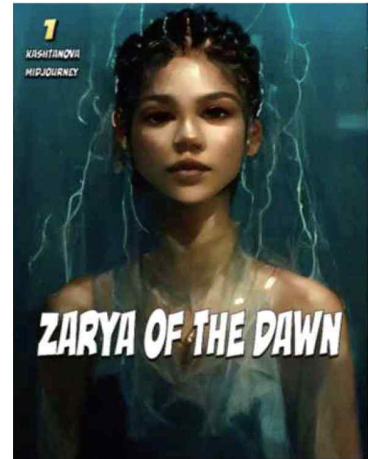
- (프롬프트 창작성 사례 ②)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는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18쪽 분량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아’를 제작. 이 삽화들을 생성하기 위해 키워드 대신 1,500여 개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으며, 삽화 내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가가 스케치한 뒤 그러한 이미지를 미드저니에 활용하는 방법을 차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⁸⁾

* 그러나, 미국저작권청(USCO)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그림] 프롬프트의 창작성이 돋보이는 AI 산출물



<Jason M. Allen의 AI 생성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 >



<새벽의 자리아>

- (프롬프트 작성은 저작행위라는 주장) 프롬프트 작성은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인 사고와 의도가 담긴 과정이며,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행위라는 주장
 - 예술가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프롬프트에 구체화하여 AI가 이를 해석하고 결과물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질적인 가치를 따지지 않고,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함. 프롬프트 작성과정에서 인간의 경험, 상상력, 감정 등이 반영되기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 작가의 창작의 산물로 볼 수 있음
- (프롬프트는 단순 아이디어의 제공이라는 주장) 인간을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존재로 보거나, 프롬프트 작성을 AI 창작의 대리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반론이 존재함

8) 강현호 외, 앞의 논문, 28면.

■ 시사점

-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물성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창작성, 그리고 그것을 조작한 사람에 대한 저작자성을 논의하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박혜림, ‘ “말만 잘해도 월급 800만원” 국내 첫 뽑는 직장, 뒤길래 난리?’ , 헤럴드경제, 2024.3.15.
- 정미하, ‘AI와 대화가 직업?...코딩 필요 없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가 뜬다’ , 조선비즈, 2023.2.27.
- Hayward, Jeff., ‘The Growing Art Movement of ‘Promptism’ ’ , Medium, 2022.9.17.
- 강현호·한의태·정재석,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판단에 대한 고찰-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제146권, 2024.6.
- 김윤명, “생성형AI의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한국법학원, 2024.2
- Yanru Lyu et al, “Communication in Human-AI Co-Creation: Perceptual Analysis of Paintings Generated by Text-to-Image System” , Applied Sciences, 12 (22), (2022).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14호> 발간일은 7월 25일입니다.